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477
------	-----

2023. 3.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I.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3년 2월 6일, 박환희 의원 외 26명

나. 회부일자 : 2023년 2월 9일

다. 상정결과 : 【서울특별시의회 제316회 임시회】

- 제5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3.3.3.)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의결(수정안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박환희 의원)

1.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문화재의 홍보 및 보호 관련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시 문화재 보존과 가치확산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가.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에 관한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나.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다.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라.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마.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Ⅲ.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주우철)

가. 제정안의 개요

- 제정안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 확산을 위한 문화재 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되었음.
- 동 제정안은 「문화재보호법」 제4조제2항¹⁾ 및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참고하여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한것임.

나. 문화재지킴이 사업 현황

(1) 문화재청 현황

- 문화재청은 2005년부터 “문화재지킴이 활성화 사업”을 시행해 왔으며,

1) 「문화재보호법」 제4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사업의 활동가인 문화재지킴이를 전국에 약 6만9천여명을 위촉하여 일반 지킴이, 청소년 문화재지킴이, 청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지킴이 등으로 구분되어 문화재 주변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

-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지키는 문화재지킴이는 총 1,618명으로(2023.1.1. 기준) 개인(80명), 가족(10가구, 23명), 단체(20단체, 1,515명)로 구성되어 있음.
- 이 중 서울시 소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대상 문화재는 총 69개로 국가지정문화재 46개, 시지정문화재 23개로 구성되어 있음.

< 서울시 소재 문화재를 담당하는 “문화재지킴이” 현황 >

문화재 수	합 계	개인	가족	단체
총 69개 (국가 46, 시 23)	1,618명	80명	23명 (10개 가구)	1,515명 (20개 단체)

(2) 서울시 현황

- 서울시의 경우 2003년부터 문화재청의 문화재지킴이 사업과는 별개로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사업을 추진해 온바, 현재까지 총 3,913명의 문화재지킴이가 문화재 주변 환경미화, 문화재 모니터링, 문화재 안내, 순찰 등을 통해 문화재의 도난·화재·멸실 및 훼손 등 예방을 주요 목적으로 활동을 진행하였음.

<연도별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위촉 현황>

(단위 : 명)

연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인원	70	99	121	122	123	130	119	122	126	286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인원	326	276	290	262	257	250	247	238	226	223

- 2022년에는 22개 자치구에서 223명의 내고장 문화재지킴이가 활동하였으며, 1일 4시간 이상 활동할 경우 일 13,000원(교통비: 5,000원, 급식비: 8,000원)의 활동비를, 월 최대 4회까지 지급하였음.
- 한편 서울시의 경우 2015년부터 전체 문화재지킴이 참여인원이 감소하는 추세이며, 자치구별 등록 문화재 보유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인원 편중이 다수 발생하지만, 사업을 총괄하는 문화본부가 관성적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분석됨.

〈2022년 자치구별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현황〉

(단위 : 명)

총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223	47	27	10	3	6	1	2	7	14	2	20
	은평	서대문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송파	강동
	9	6	10	2	1	3	5	5	3	23	17

※ 2022년 미운영 자치구: 강남, 마포, 양천

다. 조례 제정의 필요성

- 문화재지킴이 활동은 개인이나 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에 의존도가 높아 지속성을 가지기 어려우며 인력 육성 또한, 훈련된 이탈자 발생 등으로 질적 향상 실현에 여러 난점이 존재하고 있음.
- 따라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행정적 체계나 협의기구를 통한 제도적 지원의 뒷받침이 절실한 상황이므로 입법 필요성은 공감할 수 있음.
- 참고적으로 타 광역자치단체의 문화재지킴이 활동 지원 조례 제정 사례를

살펴보면 충남, 경남, 충북, 경북 등 4개 도에서 이미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조례 제정을 통하여 문화재 보존과 가치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문화 계승·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 예산안 수립 시 문화본부 내 문화재돌봄, 문화재 안전경비원 배치 등 유사사업과 중복된다는 사유로 문화재지킴이 예산이 전액 감액되어 미편성된 바가 있으므로, 조례를 제정하더라도 기 종료된 내고장 문화재지킴이 사업 참여자의 활동 내용 및 결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를 통해 사업 운영을 준비할 필요성은 있음.

라. 주요 조문별 검토

(1) 문화재지킴이의 정의(안 제2조)

- 안 제2조는 문화재지킴이를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 그러나 해당 규정의 관련 법령인 「문화재보호법」 제15조²⁾에 따르면 문화재보호활동의 지원은 문화재청장의 소관사무로 명시되어 있어 문화재청장이 위촉한 ‘문화재지킴이’의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서울시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따라서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규정하도록 수정의견을 제안함.

2) 「문화재보호법」 제15조 문화재청장은 문화재를 보호·보존·보급하거나 널리 알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단체를 지원·육성할 수 있다.

<안 제2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시장의 책무(안 제3조)

- 안 제3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명시한 것으로 문화재의 보호활동 육성을 위한 적절한 규정이라고 판단됨.

(3) 시장의 노력(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안 제5조는 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명시한 규정임.
- 안 제5조제2항은 시장이 청소년을 문화재지킴이로 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일반적으로 시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청소년을 문화재지킴이로 활용함으로써 자라나는 후속 세대들이 문화재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과 시민이라는 새로운 사회적 풍토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6조는 시장이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해 수행할 수 있는 지원을 명시한 규정으로, 이미 문화본부에는 서울성곽지킴이와 같이 시민참여형

문화재 보호활동 사업이 존재함으로 예산지원 등에는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안 제7조와 안 제8조는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의 시행에 대한 사항으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확산시키고, 교육훈련을 통한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것은 지속성 측면에서 타당한 조치라 할 수 있음.

(4) 포상(안 제9조)

- 안 제9조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해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것임.
- 다만 ‘1년마다’ 라는 규정은 단기간 의미를 가지고 있어 자주 수정이 필요하며, 포상과 관련된 사항인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수여 될 수 있도록 해당 사항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

<안 제9조 수정의견>

제 정 안	수 정 의 견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1년마다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문화재 ----- ----- ----- --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재적위원 9명, 참석위원 8명, 참석위원 전원찬성)

VI.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문화재지킴이의 정의를 문화재청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아니라 서울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규정하도록 수정하고자 함.
- 포상에 있어 ‘1년간’ 단기간 의미를 삭제하고, 문화재 홍보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우수 활동가에게는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하도록 수정하는 것임.

나. 수정의 주요 내용

가. 서울시의 문화재지킴이 활동으로 규정을 수정함(안 제2조).

나. 포상 절차에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을 준용하도록 수정함(안 제9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안 제9조 중 “1년마다 문화재”를 “문화재”로, “대하여”를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

제 정 안	수 정 안
<p>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p>	<p>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p>
<p>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1년마다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p>	<p>제9조(포상) ----- 문화재 ----- ----- ----- --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p>

서울특별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재지킴이”란 서울의 문화재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여 문화재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서울시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그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문화재지킴이를 포함한 관련 활동가들과 협력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치구, 개인,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서울시장은 청소년들에게 문화재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③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서울시장은 문화재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활동 및 관련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교육) 서울시장은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서울시장은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사람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